

# 2022년 11월 경상남도 반사회 홍보목록

연번	홍보내용	담당부서	페이지
1	고위험군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권고 안내	감염병관리과	1
2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감염병관리과	2
3	쯔쯔가무시증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신규)	감염병관리과	6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안내	감염병관리과	8
5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PASS앱 확대 실시(신규)	행정혁신과	12
6	무료법률상담실 이용 안내(신규)	법무담당관	15
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신규)	기후대기과	16
8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시행	세정과	18
9	e경남물, 정기구독(정기배송) 이용 안내	소상공인정책과	20
10	3·15의거 관련자 진상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위원회	22
1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노사상생과	23
12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안내	건축주택과	25
13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신청 안내	건축주택과	29
1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 안내	건축주택과	30
15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신청 안내	건축주택과	32
16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건축주택과	34
17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건축주택과	36
18	공간정보 기반 도민 생활 밀접 정보 서비스 안내	토지정보과	37
19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규제 강화	환경정책과	39
20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안내	환경정책과	43
2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행정명령 및 공고 홍보 협조(신규)	동물방역과	49
22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동물방역과	51
2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안내(경남스마트쉼센터)	정보통신담당관	53
24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자연재난과	54
25	가정양육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가족지원과	56
26	(전문)가정위탁제도 부모 모집 홍보	아동청소년과	59
27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방법 등 안내	아동청소년과	61
28	2022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안내	에너지산업과	64
29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결함 보상) 신청 안내	에너지산업과	66
30	에너지 절약하고, '경남사랑상품권' 받아주세요!	에너지산업과	70

# 고위험군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권고 안내

(자료제공: 복지보건국 감염병관리과 ☎ 211-7633)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 접종을 권고합니다.

## □ 고위험군 집중 특별 접종기간 운영

- 접종기간 : 2022. 11. 21.(월) ~ 12. 18(일), 28일간
- 권고대상 :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60세이상, 감염취약시설)
  - ※ 가능대상 : 18세이상 기초접종(2차) 이상 완료자
- 접종백신 : 2가 백신(BA.1 모더나, BA.1 화이자, BA.4/5 화이자), 개인 선택권
- 접종간격 : 최종 접종일/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 접종 권고
  - ※ 향후 연구결과, 방역상황, 접종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여 권고기준 변경 가능
- 메시지 : 동절기 접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준비합시다.

질병관리청

사망자의 약 93%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층의 중증·사망 위험은 여전히 높습니다  
(22년 10월 4주 일평균 사망자 기준)

###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꼭! 참여해주세요

**접종대상** |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분  
※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의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백신종류** |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 3종 | BA.1 모더나 | BA.1 화이자 | BA.4/5 화이자

**접종방법** | ① 사전예약 : 사전예약 누리집(<https://hwr.kdca.go.kr>) | 02예약 가능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  
② 당일접종 : 카카오톡, 네이버 예약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예약

QR코드  
QR코드를 찍으면  
사전예약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료제공: 복지보건국 감염병관리과 ☎ 211-7634)

어린이·임신부 및 어르신의 질병부담 감소와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안내입니다.

##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 합병증이나 입원·사망 위험이 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및 영·유아와 집단생활로 지역사회 전파속도 큰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 □ 주요내용

- 접종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9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은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나, 접종력을 모르는 생후 6개월 이상 ~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동시 접종 가능

- 접종기간 : 2022. 9. 21. ~ 2023. 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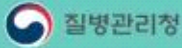
구분	접종 대상	접종기간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2009. 1. 1. ~ 2022. 8. 31. 출생자)	2회 접종 대상자	2022. 9. 21. ~ 2023. 4. 30.
	1회 접종 대상자	2022. 10. 5. ~ 2023. 4. 30.
65세 이상 어르신 (1957. 12. 31. 이전 출생자)	만 75세 이상	2022. 10. 12. ~ 2022. 12. 31.
	만 70~74세	2022. 10. 17. ~ 2022. 12. 31.
	만 65~69세	2022. 10. 20. ~ 2022. 12. 31.
임신부(임신부 확인 서류 제시)		2022. 10. 5. ~ 2023. 4. 30.

- 접종백신 : 4가 백신
- 접종장소 :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위탁의료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종 가능

## □ 문 의 처

- 시군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s://nip.kdca.go.kr>)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자)

만 70~74세 (1948.1.1. ~ 1952.12.31. 출생자)

만 65~69세 (1953.1.1. ~ 1957.12.31. 출생자)

### | 지원기간 |

2022.10.12.(수) ~ 2022.12.31.(토)

2022.10.17.(월) ~ 2022.12.31.(토)

2022.10.20.(목) ~ 2022.12.31.(토)

###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대상자, 보호자는 코로나19 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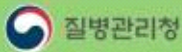
###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예방접종도우미 검색하기  
검색창에 '예방접종도우미'를 검색해주세요.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https://nip.kdca.go.kr/>  
스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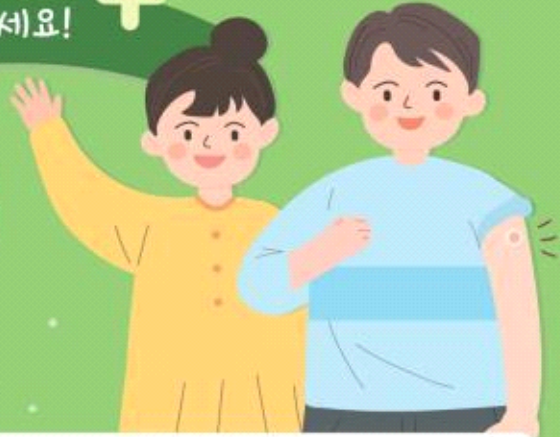


# □ 만 13세 이하 어린이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 만 13세 이하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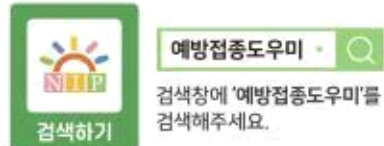
### • 2022-2023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2009.1.1. ~ 2022.8.31. 출생)  
※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한 어린이는 실제 생년월일 기준
- | 지원기간 |** **2회 접종대상자** 2022.9.21.(수) ~ 2023.4.30.(일)  
**1회 접종대상자** 2022.10.5.(수) ~ 2023.4.30.(일)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예진 의사와 상담 필요
-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1 건강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 하기
-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4 대상자, 보호자는 코로나19 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 5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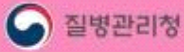
검색창에 '예방접종도우미'를 검색해주세요.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https://nip.kdca.go.kr/>



# □ 임신부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엄마와 아기 모두 지켜요!


# 임신부 누구나




## • 2022-2023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 지원대상 |**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산모수첩 등)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 | 지원기간 |** 2022. 10. 5.(수) ~ 2023. 4. 30.(일)
-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대상자, 보호자는 코로나19 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5  
20~30분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검색하기

예방접종도우미

검색창에 '예방접종도우미'를  
검색해주세요.



스캔하기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https://nip.kdca.go.kr/>



# 뜨뜨가무시증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자료제공: 복지보건국 감염병관리과 ☎ 211-7638)

도내 뜨뜨가무시증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가을철을 보냅니다.

## □ 주요내용

- 호발시기 : 10 ~ 12월
- 호발대상 : 50대 이상, 농업인, 텃밭 작업하는 사람 등
- 증 상 : 1~3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물린 부위에 딱지 형성
- 치료방법 : 항생제 치료로 회복 가능하므로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 야외활동 전

1.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2.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입기  
\*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3.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 야외활동 중

1.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 사용하기
2.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3.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3~4시간마다 뿌리기

### - 야외활동 후

1.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2.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3.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가 풀숲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
- 논밭에서 농사일, 산이나 숲에서의 야외활동이나 휴식, 나뭇 채취 등을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 가능합니다.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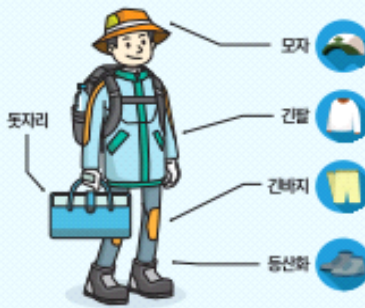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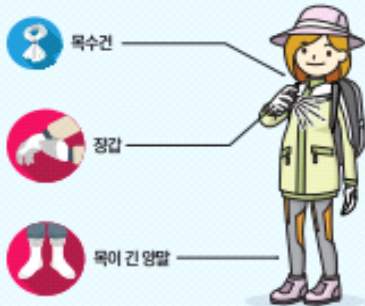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진드기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예방 3 풀숲 피하고



예방 4 털고, 씻고, 빨래하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안내

(자료제공: 복지보건국 감염병관리과 ☎ 055-211-76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 행동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 □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개인 방역수칙은?

### 개인방역 6대 수칙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⑤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⑥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 주요변경사항(9.26~)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자율전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

###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요 Q&A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1 : 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곤란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2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A3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사람이 약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4 : 검사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연번	구 분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주 소	연락처	비 고
1	창원시	창원보건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	055-225-4281	
2		마산보건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055-225-5944	
3		진해보건소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055-225-6123	
4	진주시	진주시보건소	○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055-749-5714	
5	통영시	통영시보건소	○	통영시 안개4길 108(무전동)	055-650-6050	
6	사천시	사천시보건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055-831-3620	
7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	김해시 분성로 227(외동)	055-330-4483	
8	밀양시	밀양시보건소	○	밀양시 삼문중앙로 41(삼문동)	055-359-7015	
9	거제시	거제시보건소	○	거제시 수양로 506(양정동)	055-639-6133	
10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	양산시 삼랑로 169(중부동)	055-392-5220	
11	의령군	의령군보건소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055-570-4900	
12	함안군	함안군보건소	○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055-580-3113	
13	창녕군	창녕군보건소	○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35	055-530-6217	
14	고성군	고성군보건소	○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055-670-4013	
15	남해군	남해군보건소	○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055-860-8730	
16	하동군	하동군보건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055-882-4000	
-	산청군	(산청군보건의료원)				의료기관 분류
17	함양군	함양군보건소	○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055-960-8040	
18	거창군	거창군보건소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055-940-8337	
19	합천군	합천군보건소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055-930-3683	

##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연번	시군명	선별진료소명	검체채취	주 소	연락처
1	창원시	창원경상 국립대학교병원	○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11	055-214-1000
2		한마음병원	○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055-225-0000
3		파티마병원	○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20
4		삼성창원병원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055-233-6121
5		마산의료원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116
6		SMG연세병원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055-240-7777
7		진해연세에스병원	○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055-548-7700
8		진해세광병원	○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55-1	055-540-3700
9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진주시 강남로 79	055-750-8939
10		진주제일병원	○	진주시 진주대로 885	055-756-2900
11		진주고려병원	○	진주시 동진로 2	055-751-2525
12		진주반도병원	○	진주시 남강로 701	055-749-0679
13		진주복음병원	○	진주시 진양호로 370	055-749-7119
14		진주세란병원	○	진주시 진주대로 829	055-760-7575
15		진주한일병원	○	진주시 범골로 17	055-750-1333
16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	○	통영시 중앙로 97	055-644-8901
17		새통영병원	○	통영시 무전7길 192	055-646-6000
18	사천시	삼천포서울병원	○	사천시 남일로 33(동금동)	055-835-9018
19		삼천포제일병원	○	사천시 중앙로 136	055-833-4400
20	김해시	김해중앙병원	○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055-330-6007
21		조은금강병원	○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055-330-0300
22		갑을장유병원	○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055-310-6114
23		강일병원	○	김해시 가락로 359	055-822-0153
24		김해복음병원	○	김해시 활천로 33	055-330-8888
25	밀양시	밀양윤병원	○	밀양시 삼문중앙로 32	055-354-2200
26		밀양병원	○	밀양시 밀양대로 1832	055-351-3993
27	거제시	거봉백병원	○	거제시 계룡로5길 14	055-733-0119
28		거제대우병원	○	거제시 두모길16	055-680-8119
29		맑은샘병원	○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055-384-9911
30	양산시	베데스다병원	○	양산시 신기로 28	055-912-1491
31		웅상중앙병원	○	양산시 서창로 59	055-912-0119
32	의령군	의령병원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10	055-573-4100
33	함안군	영동병원	○	함안군 칠원읍 용산2길 45-13	055-586-2000
34		아라한국병원	○	함안군 산인면 학산2길 17-50	055-582-8088
35	창녕군	한성병원	○	창녕군 창녕읍 교리1길 2	055-530-5119
36	남해군	남해병원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69	055-863-2201
37	산청군	산청군보건의료원	○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055-970-7582
38	거창군	거창적십자병원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055-944-3251



# 우리의 안전한 일상, 6대 방역수칙과 함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  
입과 코 가리기, 실내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 벗는 시간은 짧게



**코로나증상 발현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줄이기**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 최소화하기**  
3일(밀폐·밀집·밀접) 모임은 가능한 자제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PASS앱 확대 실시

(자료제공: 자치행정국 행정혁신과 ☎ 211-3628)

국민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민간플랫폼인 통신사 PASS앱으로 서비스 확대 실시합니다.

##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내용

- (서비스 앱) 정부24 앱, PASS 앱
  - (서비스 개요) 본인의 휴대폰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출 및 QR코드를 통한 진위확인 제공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기관
    - 정부24 앱 및 PASS 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 (서비스 활용)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①육안확인하거나, ②진위확인하여 신원확인 가능
    - (육안확인) 상세화면에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 (진위확인) 기본화면의 QR코드를 검증 앱\*으로 스캔하여 진위확인
- \*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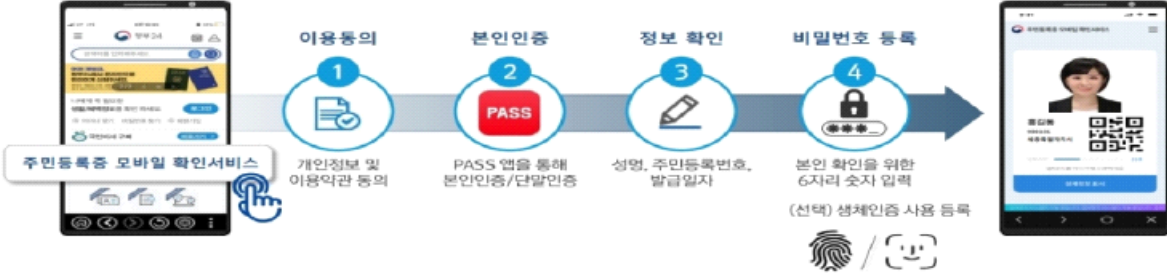
- 실물 주민등록증이 정상 상태인 경우만 이용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만 이용 가능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시 즉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이용불가하게 되며, 분실신고 해지시 서비스 재가입 필요
- 휴대폰 분실시 즉시 통신사에 분실신고하여 타인의 도용 방지
- 스마트폰 기기 변경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서비스 재등록 필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24 앱 (서비스 등록)**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서비스 등록 완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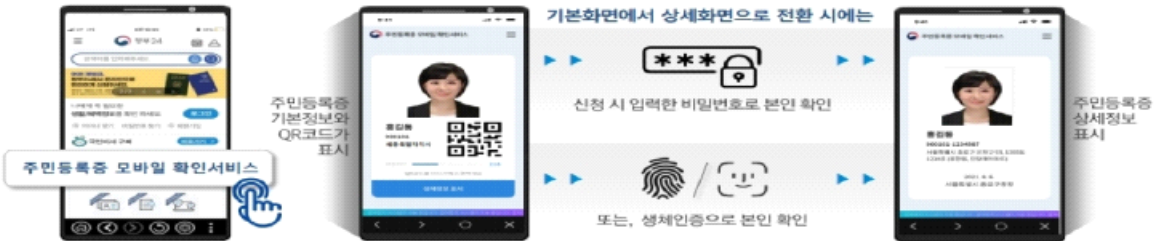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24 앱 (수룩사항 확인)**

정부24 로그인 필요

기본화면

상세화면



기본화면, 상세화면 하단에 '캡처방지시스템이 적용중입니다' 문구가 왼쪽으로 흘러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24 앱 (QR진위확인)**

정부24 로그인 필요

결과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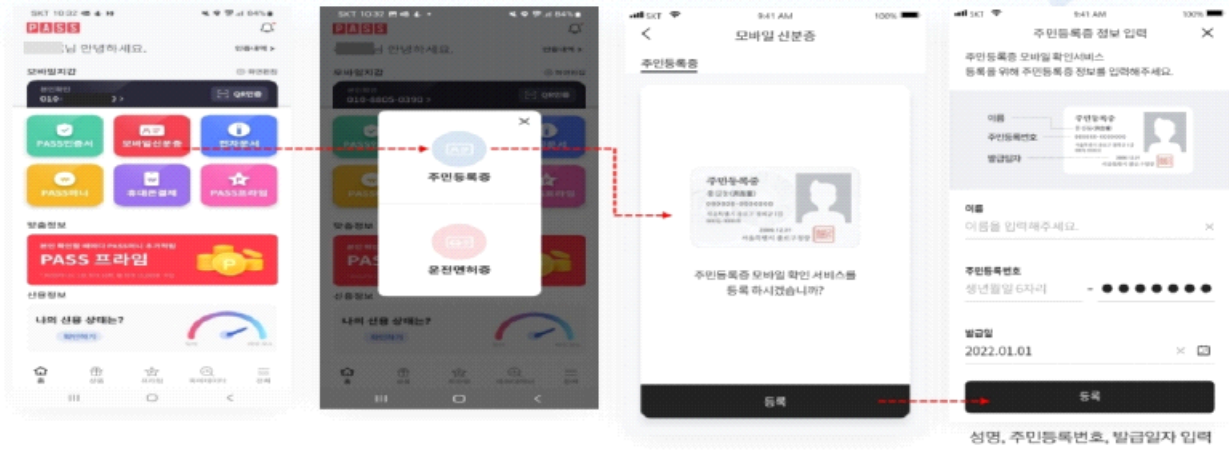
- 왼쪽 상단 ≡ 메뉴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3

## PASS PASS 앱 (서비스 등록)

SKT, KT, LGU+ 통신사별로 화면이 약간씩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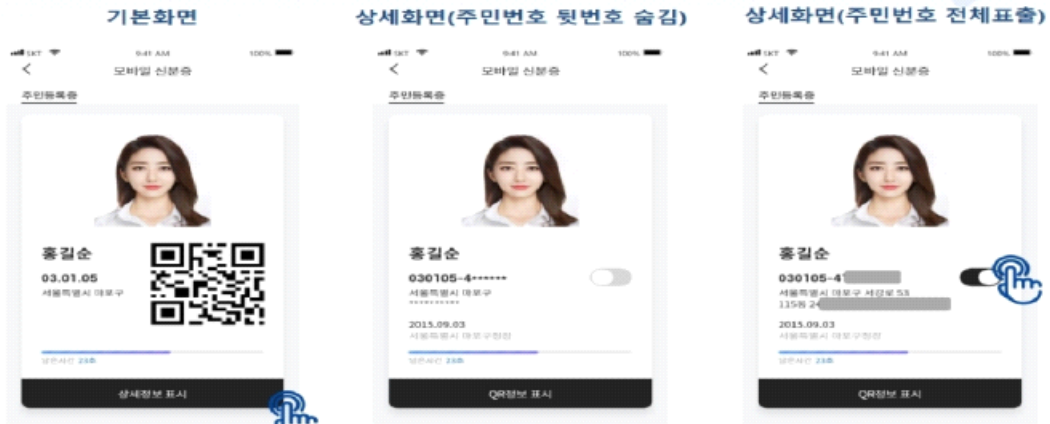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4

## PASS PASS 앱 (수록사항 확인)

SKT, KT, LGU+ 통신사별로 화면이 약간씩 다를 수 있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5

##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QR진위확인)



실명인증 선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6

## 무료법률상담실 이용 안내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211-2535)

도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 경남도에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대상 : 경남도민 누구나
- 상담관 : 도지사가 위촉한 상담관(변호사) 16명  
(중부권 7명, 서부권 3명, 동부권 6명)
- 상담내용 :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각종 법률문제 상담  
※ 주요내용 : 부동산 및 임대차, 채권·채무, 손해배상, 이혼 및 상속 등
- 상담방법 : 방문·전화·사이버 상담
  - 방문상담 : 사전예약제 ☎ 055)211-2535

구 분	시 간	장 소	비 고
중부권	상시 운영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	도청 본관3층 청문·법무상담실	추후 재개 예정
서부권	매월 셋째 월요일 15:00~17:00	경남도청 서부청사 2층 소회의실	서부청사는 진주에 소재함
동부권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14:00~17:00	김해시청 민원청사 2층 상담실	-

- 전화·사이버상담 : 상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답변

▶ 전화상담 : ☎ 055)211-2535

▶ 사이버상담 : 도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무료법률 상담 - 사이버상담

### □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접수 및 기타 문의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 055)211-2535
- ※ 운영시간 : 매주 월~금 09:00 ~ 12:00, 13:00 ~ 18:00 (공휴일 제외)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211-669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8개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 □ 추진배경

-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도심지 운행제한 필요성 및 노후차 친환경 전환 유도를 통한 저공해 미조치 차량 제로화 추진

## □ 개요

- (시행시기) 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제한시간)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도 87천대, 전국 778천대('22.9월 기준)
- (대상지역)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8개 시)
- (제한방법) 자동차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도내 108개 지점 130대 카메라)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 자동차 등
- (위 반 시) 10만원(1일 1회, 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

## □ 홍보내용

- 1833-7435(콜센터) 및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여부 확인 가능하며,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협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환경과 문의
- 타 지역 운행 시 발령시기 및 단속기준이 상이하여 해당 지역의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
-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동안 수도권·부산·대구지역 상시 운행제한 및 특·광역시(광주, 세종, 대전, 울산) 시범 운행제한 시행(시범운영은 과태료 미부과)

활기찬 경남 행복의 도민



**운행제한 안내**

- 시행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21시)  
※ 토요일, 공휴일 제외(경일예만 단속)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소방 업무용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2.12.31까지)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23.12.31까지)
- 시행지역 : 도내 8개 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 시행방법 : 주요 도로 무인 단속카메라(CCTV)
- 위반시 조치 : 과태료(1회 1회 10만원) 부과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기타 안내**

-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긴급 재난문자로 안내됩니다.
- 재난문자가 수신이 안 된다면?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에서 SMS 안내 서비스 신청  
▶ 전국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안내 문자 제공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과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1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내 차의 등급 확인하기

3

운행제한 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4

정보입력(본인인증) 및 신청완료
- 전화신청 : 경상남도 콜센터(055-120) 차량등록 시·군 환경과
-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비용 지원

**운행제한 제도 안내**

구분	비상 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녹색 교통지역	수도권 노후경유차
시행 지역	전국	수도권·부산·대구 (공주·대전·울산·세종은 시행단속)	서울 한양도성 내	수도권
시행 시기	비상조치 발령 시	12~3월	연중	연중
단속 대상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특정 경유차
과태료	10만원/일	10만원/일	10만원/일	20만원/일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 1833-7435(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시행

(자료제공: 자치행정국 세정과 ☎ 211-3764)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기부자,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

## □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도모

## □ 고향사랑 기부제란?

- (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주소지 외 전 지자체\* \*창원시민은 경상남도 창원시 제외
- (상 한 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답례품 : 기부금의 30%이내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기부시 전액 공제 / 10만원초과~500만원 16.5% 추가 공제
- (처벌규정) 기부 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기부방법) 대면·비대면 양방향 기부 가능
  -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온라인), 지정 금융기관 방문 접수(농협)
-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한도) 개인당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
  - (허용)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 (금지)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허용되지 않는 유가증권 등
- (운영체계)



※ (기부대상) 주소지 외의 광역·기초 지자체, (기부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세액공제) 10만원 한도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 제공



# 고향이 어렵니까?

##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시행

사랑하는 내 고향, 기부금으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 ♥ 사용처

주민복지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 ♥ 기부처 및 기부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 ♥ 기부자 혜택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기부자 답례품 (기부금 30%) 지급



# e경남몰 정기구독(정기배송) 이용안내

(자료제공: 경제기업국 소상공인정책과 ☎ 211-3433)

도내 우수상품을 소비자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원하는 날짜에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정기구독 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 □ e경남몰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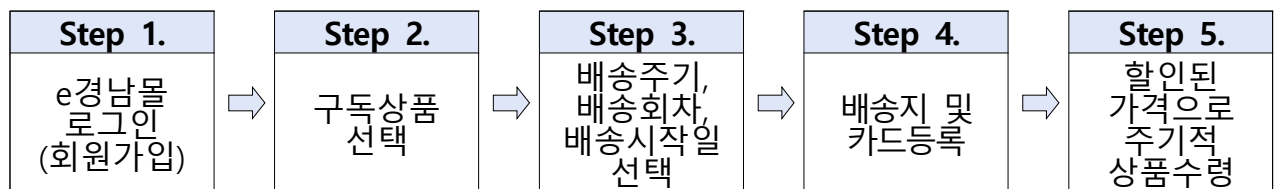
- 도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우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도와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egnmall.kr)
- 도내 모든 제로페이, 카카오네이버페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하며, 다양한 이벤트 실시 및 도·시군에서 추천하는 양질의 상품 판매  
\* 앱 설치 시 다양한 이벤트를 수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정기구독(정기배송) 이용

- 이용기간 : '22. 3월 ~ '22. 12월
- 대상품목 : e경남몰 정기구독 카테고리내 상품 \* 상품명에 "정기구독"으로 표시 됨
- **★혜택★** : 50% ~ 30% 할인된 가격으로 정기적 상품 배송
  - 정기배송 **1회차 50%, 2회차 30%, 3회차 30%, 4회차 50% 할인**
  - **회차별 최대 2만원 할인** \* 예산 소진내역에 따라 할인을 변동될 수 있음  
ex) 4만원 상품을 1주 간격으로 4회차 정기구독하는 경우

구분		1회차(50%)	2회차(30%)	3회차(30%)	4회차(50%)
일반구매 결제액		4만원	4만원	4만원	4만원
정기구독	결제액	2만원	2만8천원	2만8천원	2만원
	할인액	2만원	1만2천원	1만2천원	2만원

- 결제방법 : 배송시작 희망일 1일전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회차별 자동결제
- 사용절차



- 취소방법 : 마이페이지 → 정기구독관리 → 해당상품 구독해지


 중소기업유통센터 x e경남몰  
 . 생필품부터 농축수산물까지 .  
**e경남몰 정기구독서비스**  
 최대 50%할인된 가격으로 편리하게 e경남몰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세요!

**01 정기 구독 서비스란?**



매주, 매월 원하시는 날짜에 정기적으로 e경남몰의 상품을 할인 금액에 배송 받고, 구독기간이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높아져 자주 시키는 상품 주문의 번거로움도 줄어들면서 저렴한 가격에 정기적으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b>1회차</b> 50%할인	<b>2회차</b> 30%할인
<b>3회차</b> 30%할인	<b>4회차</b> 50%할인

지금 바로 e경남몰의 다양한 상품을 정기 구독해 보세요!

**02 정기구독 방법**

**STEP 1**  
원하시는 상품을 정기 구독 결제 후 배송일자(배송 출발일) 지정

**STEP 2**  
카드를 등록하면 매달 자동으로 결제

**STEP 3**  
원하시는 날짜에 정기적으로 상품 수령



**e경남몰 정기 구독 하러가기**

**주의사항**

- 1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이벤트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최대 할인율은 50%이며, 최대 할인 금액은 20,000원입니다.
- 3 정기 구독 취소 후 다시 정기 구독한 경우 할인율 회차는 초기화됩니다.

## 3·15의거 관련자 진상규명 신청 안내

(자료제공: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 243-4991)

3·15의거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그 친족관계에 있는자,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자의 진상규명 신청 안내

###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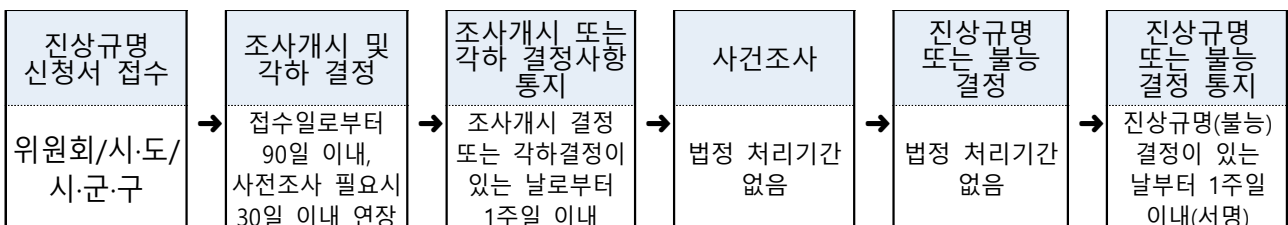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1960.3.15.부터 1960.4.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참여자의 진상규명을 위한 3·15의거과 신설 및 창원사무소 개소(2022.1.21.)

※ 3·15의거과(1과 3팀), 정원/현원(12명/8명)

### □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1.21. ~ 2022.12.9.
- (신청자격)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구술신청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증빙서류 \*  
\*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증거자료(필수×) 등
- (진상규명범위) 1960.3.15. ~ 4.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
- (접수처) 진실화해위원회 서울/창원사무소 055-243-4991, 창원시청 055-225-3633,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재외공관

### □ 처리절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자료제공: 경제기업국 노사상생과 ☎ 211-3573)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노동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 지원 대상

- 노동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인 노동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

### □ 지원 방법

-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사업에서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법정납부 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 □ 신청 방법

- (온라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사업장 업무→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팩스·우편·방문 등)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일하는 누구나! 사회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이렇게 받으세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노동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누가 혜택을 받나요?

노동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노동자 중 아래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노동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는 노동자

#### \* 지원 제외대상 기준

[ 재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 ]

###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떻게 지원받나요?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사업에서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은?

#### 온라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팩스·우편·방문 등)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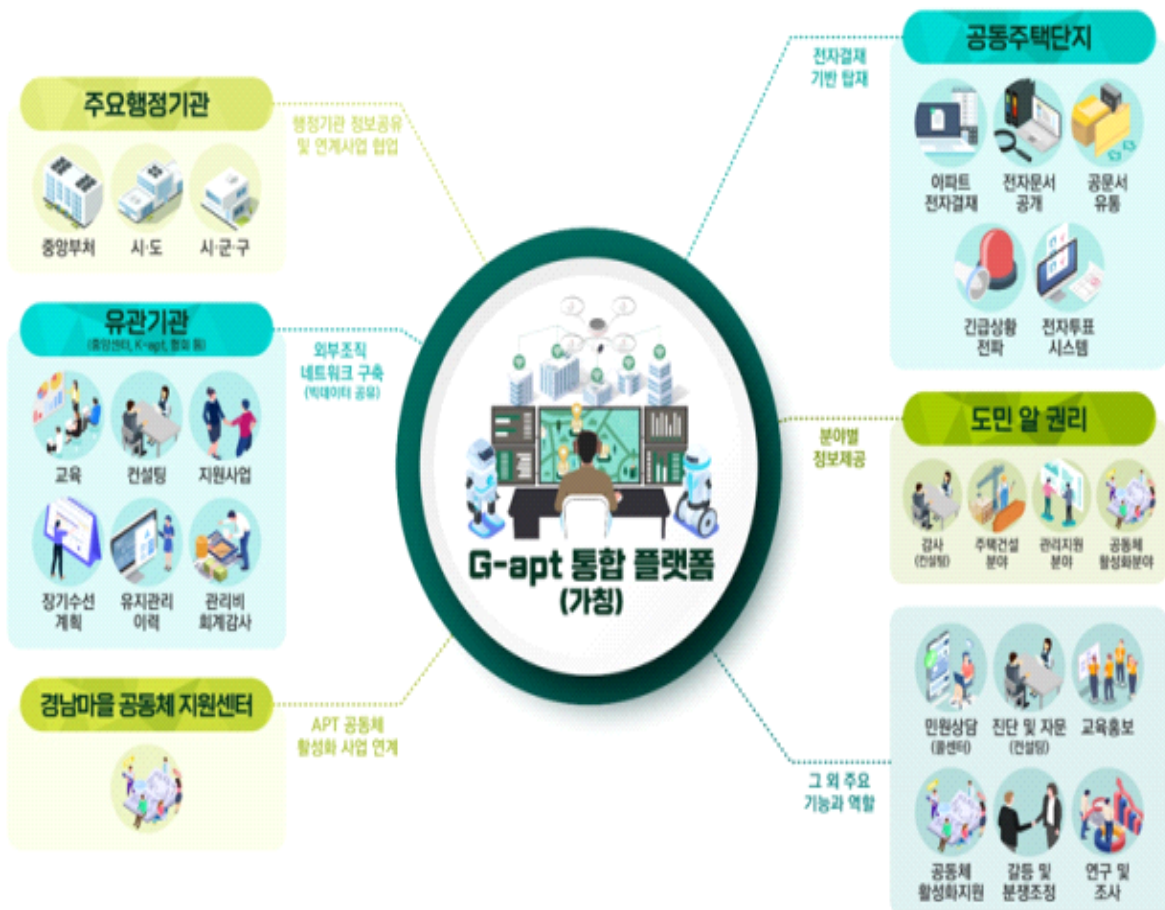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211-4354)

공동주택 전 생애 종합관리 행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거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사업 안내입니다.

## □ 추진배경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분쟁과 민원이 증대, 이에따라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방안이 필요해짐
- 공동주택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이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 서비스 지원 필요



## □ 추진개요

○ (사업목표) 공동주택 전 생애 종합관리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2020. 11. ~ 2024. 12.

○ (사업내용) 경남형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주요 사업범위	세부 서비스 항목
공동주택관리 정보제공	관리비 정보, 입찰/계약정보, 가격정보, 유지관리 이력정보 등
공동주택 전자결재	공동주택 전용 전자결재, 지자체/단지간 문서유통, 공동주택 업무표준 양식 등
공동주택 전자문서 관리	전자문서 공개, 권한별 문서접근 관리, 자동공개/비공개 전환 등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긴급상황 전파, 안전 현장점검,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주택관리 교육 및 컨설팅, 민원상담(콜센터) 등
공동주택 전자투표	투표결과/개찰결과 공개, 세대별 투표권 설정,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인증서 관리 등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사업 등

## □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단계	1단계 (2021년도)	2단계 (2022년도)	3단계 (2023년도)	4단계 (2024년도)
추진사업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통합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4개 단지)	시스템 개선 및 운영 고도화 (의무관리대상단지)	적용대상 확대, 모바일 앱 개발
사업내용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분석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구상	공동주택 통합포털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시범단지 운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 실운영 및 기능 개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의 적용범위 확대, 모바일 앱 개발

## □ 기대효과

- 입주민 자율관리체계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의 종합적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



- 공동주택 전 생애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행정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거문화 구현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055-211-4346)

##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용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및 임차보증금 대출금(4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 ②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③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사회초년생*(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 기준	해당 요건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자
	미혼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sup>2</sup>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 사업 수혜자
  -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 (미혼일 경우)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 (기혼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초년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 (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도 같이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해당서류 제출 할 필요 없음

## □ 사업 지원신청 안내

- 경남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조건,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 경남바로서비스 사업내용, 공고문 참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055-211-4346)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란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도내 지원대상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가입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서울보증(SGI) : <https://www.sgic.co.kr/chp/main.mvc>  
\* 상품→ 주거안정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 주택금융공사(HF) :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도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준)
- (지원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2.1월 ~ '22.12월(보증 갱신일 포함)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21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1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13,568	107,552	114,709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 :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발 행 처
①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인쇄 및 방문과 비치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가입기관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④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0~2021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세무과, 재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인터넷발급가능)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1년 1~12월 고지금액 표시 ※ '21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1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가능)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피부양자일 경우)	
⑧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⑨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⑥, ⑦ 관련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 혼	가입자	○	○	×
	피부양자	○(부양자)	○(부양자)	○
기 혼	외별이	가입자	○	×
		피부양자	×	○
	맞별이	가입자	○	×
		가입자	○	×

□ 사업 지원신청 안내

○ (접수처 및 연락처)

- 방문신청 :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해당 과 방문
- 온라인 신청 :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211-4346	사천시 건축과	831-3218	밀양시 건축과	359-5388	창녕군 도시건축과	530-1383
		통영시 건축과	650-5744	함안군 혁신전략 담당관	580-2545	고성군 군정혁신 담당관	670-2713

○ (신청서류) 각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바로서비스 내에서 참조



#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211-4355)

공동주택 공동체 신뢰회복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주요내용 및 신청절차 등 안내입니다.

## □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이란?

- 공동주택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아파트에 직접 가서 관리 서류와 현장을 살펴보고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걸쳐 개선할 점과 개선방법, 주의할 점 등을 자문

## □ 주요내용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컨설팅 분야 : 5개 분야 27개 항목
  - 관리행정, 회계, 시설행정, 소방시설, 공동체 활성화
  - 공동주택 분쟁, 일반민원,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 제외
- ※ 소방시설,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컨설팅 진행

## □ 컨설팅 절차

- 입대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신청서 제출

①컨설팅 신청	②컨설팅반 구성	③컨설팅 실시	④컨설팅 결과 제출	⑤컨설팅 결과통보	⑥반영여부 제출
입대의 (관리주체) → 시·군 → 도	도	컨설팅반 (시군참여)	컨설팅반→ 도	도→입대의 (관리주체)	입대의→도 (관리주체)

- 결과통보 : 컨설팅 실시 후 30일 이내

-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안내**

경상남도에서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컨설팅반’ 이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보다 나은 공동주택 관리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컨설팅 개요**

● **분 야** : 5개 분야

- ▷ 관리행정 분야 : (1) 관리규약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3) 관리주체 (4)계약사무 (5)장기수선계획
- ▷ 회계업무 분야 : (6) 자금관리 (7)계정관리 (8)자산관리 (9)충당금관리 (10)관리비 등 수입비용 (11)사업계획 및 예산 (12)결산관리 (13)세무관리
- ▷ 시설행정 분야 : (14)안전관리계획 (15)소방계획 (16)승강기운행관리계획 (17)CCTV운영계획 (18)건축물안전점검 (19)정기진단 (20)어린이놀이시설 (21)전기안전관리 (22)공동저수시설 (23)중앙난방시설
- ▷ 소방시설 분야 : (24)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소방차전개공간)
- ▷ 공동체활성화 분야 : (25)공동체활성화 사례 안내 (26)입대의부녀회 갈등 상담 (27)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안내

- **내 용** : 회계·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분쟁, 일반민원,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

**컨설팅 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 입대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 공동주택단지 ⇒ 시군 공동주택 부서 ⇒ 도 건축주택과
- **문 의** :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 ☎211-4355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211-4323)

건축허가 또는 그와 관련된 민원 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안내입니다.

##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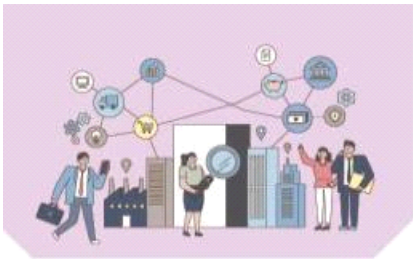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 후 행정청의 불허가 사례 지속적 발생(행정심판 증가)
- 건축허가 가능여부등을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확인으로 토지매입 및 설계비에 소요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과 민원 처리기간 단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

## □ 개 요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건축허가 부서에 신청하면 건축허가 가능여부,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건축허가, 공장설립,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으로 청구된 민원을 심사하는 제도
- (신청방법)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 시·군 민원부서

## □ 홍보내용

-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요청



**사전심사청구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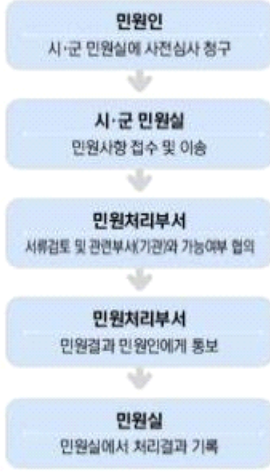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결과(가·부)를 알려줌으로써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처리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 대상민원** ▶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인·허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 운영기간** ▶ 연중
- 접수처** ▶ 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총 30일(대상민원별 상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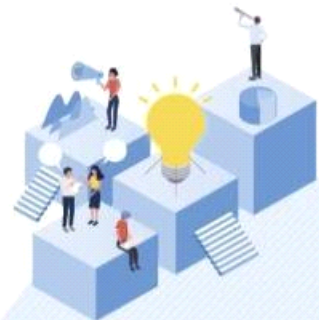
**경상남도 | 건축주택과**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Tel. 055-211-4324 Fax. 055-211-4319

함께 만드는 행복한 새로운 경남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 안내**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란?**

- 이 민원은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실계를 약식으로 작성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의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로, 건축물을 새로이 짓고자 하는 도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운영근거** ▶ 건축법 제10조
- 신청방법** ▶ 온라인(세움터), 방문, 우편
- 접수처** ▶ 시·군 건축허가부서
- 처리기간** ▶ 총 45일
- 수수료** ▶ 없음



**누가, 무엇을 신청하나요?**

건축물을 새로이 짓고자하는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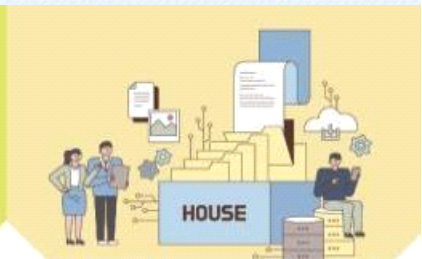
- 0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 02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 0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온라인 신청 방법은 ?**

▶ 세움터 (<https://cloud.eais.go.kr>)

**신청서 내려 받기는?**

▶ 경상남도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진행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전결정제도 효력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2년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211-4347)

##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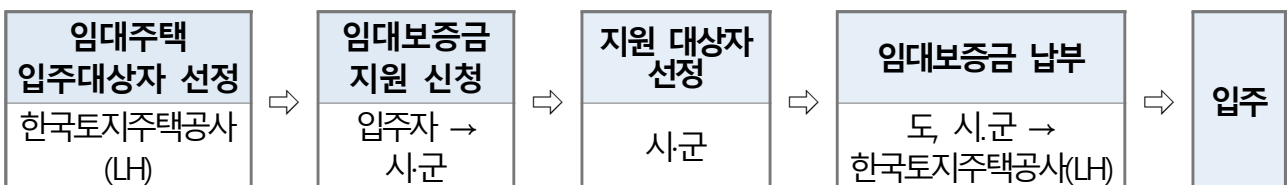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 가구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가구
  -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 무주택가구
- (지원기간)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지원조건) 본인부담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0백만원) 전액 무이자 지원,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

## □ 사업 추진 절차



## □ 사업 지원신청 안내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원	225-4224	밀양	359-5388	창녕	530-1383	함양	960-4813
진주	'22년 사업 미추진	거제	'22년 사업 미추진	고성	670-2275	거창	940-3606
통영	650-5746	양산	392-2474	남해	860-3245	합천	장기임대주택(X)
사천	831-3218	의령	570-3533	하동	'22년 사업 미추진	경남도	211-4347
김해	330-4313	함안	580-2715	산청	'22년 사업 미추진		

- (신청서류)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공간정보 기반 도민 생활 밀접 정보 서비스 안내

## [경상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2단계 완료]

(자료제공 :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211-4453)

폭염 대피소 위치 등 도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행정정보들을 GIS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 안내입니다.

### □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이란?

- 행정정보들을 공간정보 기반 시각화를 통해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시스템

### □ 접속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서 <https://gis.gyeongnam.go.kr> 접속 또는,
- 포털사이트에서 “경상남도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검색하여 접속

### □ 대민서비스 주요내용

- 민간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재난안전, 의료, 문화, 교통, 전통시장, 공유재산, 부동산 등의 다양한 정보를 GIS기반으로 서비스

#### < 도민생활 밀접정보 서비스 세부 내용 >

공공의료 정보	의료기관(병원,약국), 상비약판매처, 자동제세동기,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등
원터치 부동산 정보	토지·건축물, 토지이용계획, 부동산가격, 실거래가, 도시계획 정보 등 한 번에 조회
재난안전 데이터 맵	지진·폭염·한파대피소, 홍수, 산사태, 미세먼지 등 자연·사회 재난정보 제공
주민공동체 정보	주민공모사업, 주민공동체 현황과 주민의견 네트워크 커뮤니티 기능
문화/체육시설 정보	문화/체육시설 세부정보 및 위치조회, 공연/전시정보 사이트링크
교통시설 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위험요소, CCTV, 화물차량 차고지, 충전소 등 정보제공
전통사찰 정보	경남의 전통사찰/문화재 위치현황과 정보검색 및 조회
산업단지 정보	경남의 산업단지 검색과 입주기업 위치현황과 정보검색 및 조회
제로페이/전통시장 정보	제로페이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및 위치 검색
도시재생 플랫폼	시군 도시재생센터 회원 간 소통창구로서 네트워크 커뮤니티 기능
산림휴양 정보	경남의 산림휴양시설 위치정보 및 예약 사이트링크
공유재산 정보	공유재산 조건검색 및 위치조회, 각종 부동산정보 조회

경상남도의 모든 공간정보와 융합데이터는

[gis.gyeongnam.go.kr/](http://gis.gyeongnam.go.kr/)

# 경상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에서  
찾으세요.

## I 도민 서비스 Web/Mobile

### > 부동산 정보 및 주민생활 밀접 정보 서비스

-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V-world 등 기본 맵 서비스
- 위치기반 부동산 정보 서비스  
(토지, 건물, 공시가격,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실거래정보)
- 공공의료정보 서비스
- 공유재산정보 서비스
- 주민공동체정보 서비스
- 제로페이/전통시장 정보 서비스
- 도시숲 조성 현황 서비스
- 산업단지 정보 서비스
- 재해·재난 정보 서비스
- 문화·공연/체육시설 정보 서비스
- 교통시설정보 서비스
- 전통사찰정보 서비스
- 도시재생 플랫폼 서비스



주민 생활 밀접 정보 서비스

위치기반 부동산정보 서비스

과학적인 정책결정기반 서비스

## I 행정 서비스

### > 과학적인 정책 결정 기반 서비스

- 고정밀 공간정보 및 방대한 속성 데이터
-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데이터 분석, 통계지도 생성
- 부서간 융·복합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 스토리텔링 방식의 지도 기반 브리핑 시스템
- 3차원 실내공간정보 활용 소방 GIS 연계, 시설물관리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규제 강화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211-6644)

1인가구 증가 및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여, '22.11.24.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관련 안내입니다.

## □ 추진배경

-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
-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
  - (경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 (환경)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원인이 됨
    - ※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 □ 그간 추진 경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1994~, 식기류 등 18개 품목, 식품접객업 등 18개 업종)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환경부, 2019.11.22. 관계부처 협동) 수립·시행
  -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2022.11.24.시행)

## □ 주요내용(2022.11. 24.부터 추가로 규제되는 1회용품)

- 대상 확대(사용억제)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 대규모 점포 : 1회용 우산비닐
- 준수사항 강화(무상제공금지 → 사용억제)
  -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 등), 제과점업 : 1회용 봉투·쇼핑백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플라스틱 응원용품
  - ※ 1회용품 :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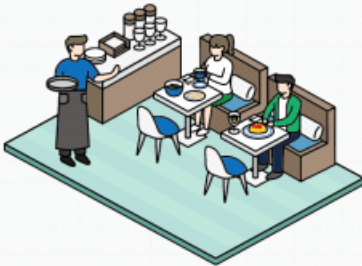


2022년 11월 24일부터



#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 사용금지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기존 품목

##### 사용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합성수지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합성수지제품은 제외)

#####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 해당)

#### 기존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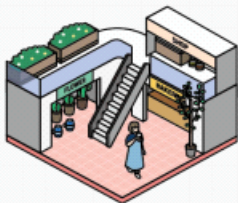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대규모점포



###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 사용금지

- 1회용 우산 비닐

#### 기존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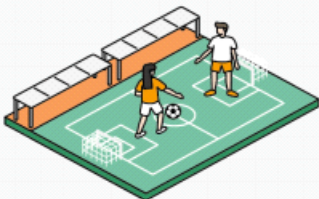
#####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 사용금지

- 합성수지(플라스틱)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 기존 품목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더 자세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붙임2

#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 업종별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휴게, 일반 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컵(합성수지·금속박 등)</li> <li>•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li> <li>• 나무젓가락, 이쑤시개</li> <li>• 플라스틱 수저·포크·ナイ프</li> <li>• 비닐식탁보</li> </ul>	시행 중	
	제작배포업체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컵</li> <li>•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li> </ul>	시행 예정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선전물</li> </ul>	시행 중	
2.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li> </ul>	시행 중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li> </ul>	시행 중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li> </ul>	시행 중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 봉투 및 쇼핑백</li> <li>• 우산 비닐</li> </ul>	시행 중 시행 예정	
	제작배포업체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선전물</li> </ul>	시행 중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li> </ul>	시행 중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수지 응원용품</li> </ul>	시행 예정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일반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 봉투 및 쇼핑백</li> </ul>	시행 중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제작배포업체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선전물</li> </ul>	시행 중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 봉투 및 쇼핑백</li> </ul>	시행 예정
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제작배포업체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선전물</li> </ul>	시행 중	

※ 파란색은 '22.11.24일 규제 강화, 붉은 색은 '22.11.24일 규제 품목 추가

## ○ 1회용품별

1회용품	업종	준수 사항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 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포크·ナイ프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9.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과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 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대규모점포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0.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1. 비닐 봉투·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파란색은 '22.11.24일부터 규제되는 품목 및 업종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안내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211-6644)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체계 전 단계 개선을 위하여 '20.12.25부터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 홍보입니다.

##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란?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투명 페트병을 타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제도

## □ 주요내용

- 관련근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 시행시기 : '20.12.25.부터 시행
- 대 상 : ('20.12.25) 공동주택\* 先시행 → ('21.12.25)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전국적 확대  
\* (공동주택) ①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 □ 관련 추진사항

- 환경부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균 2매의 마대 배포 중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창원,김해) 실시('20년)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량(세대수)	전단지 배부	전용그물망	전용봉투
계	340	312,345	29만부	30,056	2,319,410
창원	120	95,741	10만부	8,556	994,410
김해	220	216,604	19만부	21,500	1,325,000

## □ 홍보내용

- 경남 플라스틱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생활 속에서 도민들이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요청
- 특히, 페트병 분리배출 시 압착하여 뚜껑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  
⇒ 뚜껑의 경우, 재활용 과정의 세척 공정에서 비중차이에 따라 몸체와 분리가 가능하여 배출의 편의성 및 부피 저감 등을 위해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

공동주택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2만톤의 페페트 수입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 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플라스틱 배출함에 일괄배출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하기

##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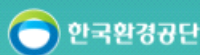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좌-악  
뚜껑 닫기-



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왜 1년 뒤 시행인지?

-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
- ☞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혼합방지 대책 등을 추가로 마련 후 '21.12.25부터 시행할 예정임

② 뚜껑을 닫고 배출하라고 하는데, 뚜껑은 다른 재질이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운 게 아닌지?

- ☞ 최근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아져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음
- ☞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며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 앉는 재질임, 이에 따라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재활용할 수 있음
  - ※ 다만,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 다만,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하는 것도 가능함

③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인 음료·생수 외에 투명한 간장통,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등도 같이 배출이 가능한지?

- ☞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같이 배출 가능함
- ☞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함
  - ※ (일회용컵) PET 외에 PS 등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다른 재질로 생산된 경우가 있고,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짐
  - (트레이) 스티커,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고, 성형을 위해 일부 순수 PET 이외의 재질(PET-G)을 혼합하여 제작한 용기가 있음

④ 분리배출보다 먼저 라벨을 떼기 쉽게 하고, 유색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 환경부는 '19.12.25일부터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고,  
\* 열알칼리성 수용액(NaOH 2%)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접착제
- ☞ 라벨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 등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넣도록 하고 있음
  - 절취선을 넣지 않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라벨 사용 시 ‘재질·구조 등급평가’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제품 표면에 표시하고,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강화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20% 할증
- ☞ 올해 12월부터는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생수)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20.12.4 시행), ‘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라벨이 부착된 먹는샘물(날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

⑤ 어릴 때부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는 등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닌지?

- ☞ 현재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페트병 생산·유통업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음
  - \* 환경부 유튜브에 “매미김 김동현이 알려주는 페트병 분리배출” 게시
- ☞ 아울러, 교육부와 협의하여 분리배출 전 과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

⑥ 옷 한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페트병의 양은 얼마인가?

- ☞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이 들어가며,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 소요

⑦ 관내 아파트에서는 배포된 마대보다 작은 마대를 쓰거나, 비닐로 수거하고 있어 배포된 마대 사용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이번에 배포된 마대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크기를 배포한 것으로 전국단위로 배포가 이뤄지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배포된 마대가 아닌 기존 수거 방식을 활용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

⑧ 마대를 받지 못한 곳도 있는데 마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 자원순환 도우미가 배치된 1.5만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배송

☞ 도우미 미배치 등으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인데도 못 받은 곳 중 현재 수요조사를 마친 70개 지역 약 4천장은 12월~1월초 중 요청받은 배송지로 발송(아파트 직접 배송,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청으로 배송)할 예정

⑨ 배포된 마대인 단지당 2매는 대단지 등에서는 사용하기에 양이 너무 부족한데 추가 배포 계획이 있는지?

☞ 현재 추가로 3.6만매를 제작하고 있으며, 1월 중 집중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1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 추가 배포는 지자체별 공동주택 세대수, 배출하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으로 직접 발송할 예정(추후 1월 중 공문으로 안내)

☞ 추가로 기존에 배출장소마다 설치된 플라스틱 수거함 2~3개 중 1개를 페트병 전용으로 표시해서 사용하면 추가 마대 없이도 가능함을 안내하고,

☞ 추가로 필요하다면 아파트단지 등에서 마대를 추가로 구비하여 협조해 달라고 요청

\* 현재 배포하는 마대는 다회용이긴 하나, 제도 초기 정착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후 별도 배출을 위한 마대는 배출자가 구비 필요



⑩ 배포된 마대를 무시하고 수거업체에서 혼합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합수거 및 혼합배출에 대한 민원이 다량 있을 것으로 예상
- ☞ 관할 내 공동주택에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자 신고제도에 따라 페트병이 별도 신고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점을 안내하면서 별도 배출이 불가피함을 안내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별지 제4호의9서식
- ☞ 수거업체에는 혼합수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도록 규정, 이를 위반 시 법 제66조 제1호,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의 2. 다. 6)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으나, 처벌 시 수거 공백, 법적디툼 지속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규정의 언급보단 협조를 우선적으로 요청
- ☞ 지속적인 비협조 시 추후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수거체계 관리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⑪ 배포되는 마대 크기와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12월 아파트 배포 마대	추가 배포예정 마대
	
<p>사이즈(cm) : 90(가로)×90(세로)×120(높이)</p>	<p>사이즈(cm) : 100(가로)×100(세로)×145(높이)</p>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행정명령 및 공고 홍보 협조

(자료제공: 농정국 동물방역과 ☎ 211-6575)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철새도래지, 가금농장으로 사람·차량 출입통제 등 11건의 행정명령 및 9건의 방역기준 공고를 시행합니다.

## □ 배경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공고 시행 추진
-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 전파 차단 효과가 있었던 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22. 10. 1.부터 운영

## □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유입·전파 차단
- (운영기간) 2022.10.1. ~ 2023. 2.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행정명령)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등 11건(붙임)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 고)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등 9건〔붙임〕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 협조사항

- (가금농장 및 관련 종사자)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적극 이행
- (도민) 가금농장으로 외부인 및 일반차량 진입금지 및 가금 방사사육 금지, 전통시장 살아있는 오리 등 유통판매시 동물방역부서에 신속한 신고

## □ 문의처 : 가축전염병 신고전화(1588-4060) 및 시군 동물방역담당 부서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별칙
행정명령 (11건)	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진입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5.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6.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7.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8.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9.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0.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1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고 (9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6.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7.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자료제공: 농정국 동물방역과 ☎ 211-6563)

도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및 장애인보조조건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 □ 추진배경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
- 경제적 사정으로 반려동물의 치료 적기를 놓치는 사례 빈발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량 : 1,666가구
- 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100<sub>(25%)</sub>, 시군비 200<sub>(50%)</sub>, 자부담 100<sub>(25%)</sub>)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장애인 보조조건 소유자
-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 □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조건 : 주민등록상 경남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반려동물소유자  
내장형 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 이미 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지원절차
  - 선정 대상자는 도내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 전액 수납
  -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후, 진료 영수증 발급
  - 진료 영수증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관할 시군(읍면동)에 보조금 신청
  - 시군(읍면동)은 서류검토 후, 자담(25%) 제외한 진료비 계좌 입금

반려동물과 더불어 우리 함께 행복한 경남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지원조건**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를 갖고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보조견

**| 지원내용** 가구당 연24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25% 포함)  
 - 진료비 24만원 청구시 : 18만원 지원, 6만원 본인부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람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안내(경남스마트심센터)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 211-2618)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입니다.

### ☐ 경남스마트심센터 이용안내

- 대 상 : 유아동, 청소년, 성인(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 이용방법
  - 전화상담 : 1599-0075(전국), 055)211-7333~5(경남) (평일 9~18시)
  - 내방상담 (전화, 온라인 예약 필요)
    - 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실시(평일 9~18시)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경남연구원 1층 102호
  - 가정방문상담
    - 전화·온라인 신청 후 상담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

※ 모든 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

### ☐ 인터넷 및 스마트폰 바른사용 실천 가이드

- 편한자세보다 불편해도 ‘바른자세’가 좋아요
- 스마트폰을 ‘약속된 장소’에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요.
-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얼굴보며(eye-contact)’ 대화해 보세요.
- (보행·이동 시) ‘안전하게’ 가방에 꼭 넣어요.
- (공공장소 등) 통화, 음악감상, 동영상 시청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본매너’를 실천해요.
- 자신(자녀)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QR코드를 통한 자가진단)



#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자료제공: 도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 211-2836)

풍수해와 지진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때 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하여 재난을 대비합니다.

## ☐ 풍수해보험이란?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재고자산)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소유자 외 세입자도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보조해드립니다.
  - ☞ (정부지원율) 주택·온실 70%, 소상공인 70%, 취약지역\* 87% 지원
  - \*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 ☐ 소상공인 우대혜택은?

- 보험가입 증권(사본)으로 아래의 우대혜택(중복가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우대혜택	1.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평균 1.2% > 0.8% 2.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일반 85% > 90% 3. 5천만원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 약식평가, 한도상향 등 우대적용가능	대출금리 0.1% 우대적용 ☞ 대상: 정책자금 6종						
		<table border="1"> <tr> <td>일반소상공인자금</td> <td>사업전환자금</td> </tr> <tr> <td>여성가장지원자금</td> <td>창업초기자금</td> </tr> <tr> <td>고용안정지원자금</td> <td>청년고용특별자금</td> </tr> </table>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문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1588-7365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 가입문의

- 시·군청 재난부서, 읍·면·동 풍수해보험담당자, 6개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02)2100-5103	02)2100-5104	02)2100-5105	02)2100-5106	02)2100-5107	02)2100-0164

**붙임****풍수해보험 주요 보상사례** 주택

가입	목적물	주택	지역	남해군
	총보험료	41,900원	가입자부담	19,900원
			보험료지원	22,000원
피해	피해일자	2019. 9. 22.	피해유형	태풍
	손해구분	전반파	피해면적	33m <sup>2</sup>
지급	지급보험금	33,750,000원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반파 6,500,000원 (보험금이 5.2배 큼)

 온실

가입	목적물	온실(비닐하우스)	지역	밀양시
	총보험료	2,895,500원	가입자부담	243,200원
			보험료지원	2,652,300원
피해	피해일자	2016. 10. 5.	피해유형	태풍
	손해구분	소파	피해면적	1,650m <sup>2</sup>
지급	지급보험금	15,859,800원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소파는 재난지원금 미지원

 소상공인

가입	목적물	소상공인 재고자산	지역	포항시
	총보험료	81,300원	가입자부담	40,200원
			보험료지원	41,100원
피해	피해일자	2019. 10. 3.	피해유형	태풍
	손해구분	-	피해면적	-
지급	지급보험금	30,000,000원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미지원



## 가정양육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자료제공: 가족지원과 ☎ 211-5274)

### □ 시간제보육서비스란?

- 가정양육시에도 부모가 외출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자녀 (6개월~36개월)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 □ 주요내용

- 이용대상 : 어린이집 · 유치원 미이용 영아(6개월~3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
- 이용시간 : 평일 9:00~18:00 [한도 : 월 80시간]
- 이용방법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방 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기 간	서비스 이용일 1일전까지	서비스이용 당일 15시까지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준비물	○ 개별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발급 필수)	

- 보육료 : 시간당 4천원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 3천원 정부지원 되어, 1천원만 부모부담(월 80시간 한도내)
  -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됨

이용사례	정부지원금액	부모부담금액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시 → 미이용시간 : 1시간	2시간*3,000원=6,000원	2시간*1,000원 + 1시간(미이용시간)*4,000원 = 6,000원
2시간 예약후, 2시간 30분 이용시 → 초과시간 : 30분	2시간*3,000원=6,000원	2시간*1,000원 + 2,000원(초과 30분) = 4,000원

- 유의사항 : 예약취소 또는 초과이용시 별점제 운영

## 서비스 소개

부모님들을 위한 육아 희소식

#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대 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시 간** 평일(월~금) 오전 9시~ 오후6시

**장 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료**

※ 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 분	내 용	
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지원시간	월 80시간	

## Q & A

**Q** 양육수당 수급중인 집업주부입니다. 시간제보육 정부 지원금 신청 별도로 해야하나요?

**A**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수급중이라면 정부지원금이 자동지급 됩니다.

**Q**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적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전액지급 됩니다.

**Q** 시간제보육은 기본보육반과 통합보육을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 1인당 영아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간제보육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이용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Q** 지원시간인 월80시간을 모두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달은 이용 못하나요?

**A**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부담금 (4천원)100%로 결제됩니다.

## 이용절차 및 방법



### 01 / 가입 및 등록

- **가입**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
  - **등록**
    - 부모 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클릭
    - 기관 등록 :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 아동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 처음 1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02 / 예 약

- PC/모바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 처음 이용할 경우, 아이 적응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여 예약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 가능합니다.
- ※ 예약 변경시 주의사항  
- 예약 변경, 취소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일 5일전까지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03 / 이 용

-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간식 등

### 04 / 결 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시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



###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4일전 ~ 3일전	2일전 ~ 1일전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	-2	-3	-4	-5	-7

※ 당월 누락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바우처 지원 및 사전예약이 제한됩니다. (당월 벌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언제든 나를 반겨주고,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진정엄마를 떠올리니 시간제보육도 제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엄마와 아이를 여유로운 미소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 영아 전담교사에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편안함과 아이의 발달 시기에 맞는 놀이 활동들로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마음 놓이는 곳, 나와 내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곳. 이것이 시간제보육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

## [전문]가정위탁제도 부모 모집 홍보

(자료제공: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211-4274)

친부모의 여러 가지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발생했을 때 기준에 적합한 가정위탁부모 모집을 위한 홍보입니다.

### □ 가정위탁이란?

-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

###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보호비 지원 1백만원/월)
  -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 위탁가정 조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종교의 자유 인정,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미만일 것
  -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 내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 조건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 희망 시 반드시 예비위탁 부모 교육 이수

### □ 위탁가정 혜택

- 아동의 생계, 의료, 교육급여, 상해보험 가입, 가정위탁보조금 지원(차등지급)
- 전문위탁가정 전문아동보호비(1인당 월100만원)

### □ 문의처 :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055-237-1226)

뜻하지 않게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 가정 위탁 부모 모집



## 가정위탁 보호제도

친부모의 여러가지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발생했을 때,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부모가 일정기간 양육하는 제도

## 전문가정위탁사업

영유아, 학대피해아동(0~6세), 경계선지능 아동, 장애아동 등 전문적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위탁부모가 보호하는 제도

## 일반위탁부모 기본요건

- 소득, 주거가 안정적인 가정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정
- 25세이상(부부인경우 부부모두)이며 위탁아동과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것

## 전문위탁부모 자격기준

- 기본요건(위 내용참고)
- 자격요건(사회복지사,보육교사,교사,의료인,청소년상담사 등 전문 자격증 중 1개이상 소유자, 심리전공자 (부부 중 한명)

## 위탁가정 지원혜택

### 01 신청

-전화/ 홈페이지  
055.237.1226

### 02 양성교육

-일반위탁: 5시간  
-전문위탁:20시간

### 03 자격조사

-서류심사  
-가정조사

### 04 위탁부모자격인정

## 위탁가정 지원혜택

- 아동의 생계,의료, 교육급여
- 가정위탁양육보조금(30~50만원 차등지급권고)
- 전문아동보호비(전문위탁가정-1인당 월100만원)
- 아동 상해보험가입 등



경상남도  
GYEONGNAM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방법 등 안내

(자료제공: 여성가족아동국 아동청소년과 ☎ 211-427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개념, 처벌, 유형, 신고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 아동학대 개념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 □ 아동학대 처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이상 징역

##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유형/징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학대	발생회복 있어 시간차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손바닥, 발바닥, 등, 엉덩이에 담뱃불자국, 양말모양 등 상처, 화상자국, 묶은 줄 화상 등	어른과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부모가 손상을 알려줌
정서학대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	특정물건에 대해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음, 반사회적 및 파괴적 행동장애 수면장애, 극단행동, 지나친 행동 등
성 학대	걸거나 앉는데 어려움,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임신 등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 기괴하고 미묘한 성적 행동과 지식 친한 친구가 없음, 비행, 가출 등
방임	지속적인 배고픔, 나쁜 위상상태, 부적절한 옷차림, 의학적 치료와 치과치료 부족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수업 중 조는 태도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장시간에 걸친 감독소홀, 비행 또는 도둑질 등

## □ 아동학대 신고 방법

<p><b>언제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li> <li>○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li> <li>○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li> <li>○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li> <li>○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li> </ul>
<p><b>무엇을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li> <li>○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li> <li>○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li> <li>○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li> </ul> <p>※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토록 합니다.</p>
<p><b>어떻게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화 : 국번없이 112</b></li> <li>○ <b>방문 : 관할 시·군청, 경찰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li> <li>-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li> <li>-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53-23</li> <li>-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진주시 창렬로162번길9</li> <li>-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li> <li>-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양산시 동면 석산5길4</li> </ul> </li> </ul> <p>※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p>




이 포스터는 2017년 '제 3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아이지킴콜 112**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수상함이 느껴진다면 조금만 용기 내어 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지킴콜 112,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있는 신고입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지킴콜112 앱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모바일앱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동학대' 또는 '아이지킴콜112'를 검색하세요!



# 2022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안내

(자료제공: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 211-2272)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안내입니다

## □ 현황('21.12월 기준)

- 수소충전소 구축 : 경남도내 13개소 운영(10개소 추가 구축 중)

\*창원 7(팔용·덕동·성주·중앙·죽곡·사림·가포), 진주 판문, 김해 안동, 거제 장평, 양산 물금, 통영 용남, 함안휴게소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 경남도내 1,912대 보급(승용 1,880, 버스 32)

## □ 수소충전소 구축

- 지원대상 : 주유소·LPG충전소 등 잔여 부지제공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
- 지원예산 : 일반용 30억원, 버스 등 특수용 60억원
- 의무운영 : 5년
- 지원절차 :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 지원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도민
- 지원예산
  - 승용차 1대당 33.1백만원(실구매가 3,745만원 내외)
  - 저상버스 1대당 5억원(실구매가 1.3억원 내외) \* 운수사업자용
  - 고상버스 1대당 4.6억원(실구매가 1.6억원 내외) \* 운수사업자용
  - 화물차(10ton) 1대당 4.5억원(실구매가 1.5억원 내외)
- 의무운영 : 2년
- 지원절차 :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안내

수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 지금 그 주역이 되세요!



수소는 도시가스 보다  
안전합니다!

1  
수소

\* 출처: 연료별 상대적 위험도  
(15개 항목평가, 한국산업안전공단 MSDS, 미국화학공학 외 DIPPR 등)

1.03 도시가스	1.22 LPG	1.44 가솔린
--------------	-------------	-------------

평가요소 상대적위험도(수소=1) 안정성: 수소 > 도시가스 > LPG > 가솔린

수소충전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1시간 운행 = 성인남자 50명분 공기정화"

신입 = 내연버스  
대리 = 전기버스  
부장 = 수소버스

국내 버스업계 Rule

일반	초봉이	전기	태양이	수소	말년이
입사 5년	입사 5년	입사 10년	입사 10년	입사 20년	입사 20년
소용: 40%	소용: 40%	소용: 40%	소용: 40%	소용: 40%	소용: 40%
대안: 40%	대안: 40%	대안: 40%	대안: 40%	대안: 40%	대안: 40%
기속력: 40%	기속력: 40%	기속력: 40%	기속력: 40%	기속력: 40%	기속력: 40%
총인: 100%	총인: 100%	총인: 100%	총인: 100%	총인: 100%	총인: 100%

저소음 + 고효율 연비 + 빠른 충전 = 수소차 보조금은?



3,310 만원



5 억원

창원시 055-225-3307 진주시 055-749-8639 통영시 055-650-5473 김해시 055-330-2454 사천시 055-831-2769  
달양시 055-359-5332 거제시 055-639-3963 양산시 055-392-2604 의령군 055-570-2604 함안군 055-580-2534

본사업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 수소차 보급 가능대수는 문의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결함 보상) 신청 안내

(자료제공: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 211-2295)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뚜껑형) 2005년 9월 이전 생산 제품,  
결함 보상 관련 안내드립니다.

### □ 추진배경

- 노후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 지속 발생하여, (주)위니아딤채에서 ‘20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제품 무상 수거·부품 교체 등을 시행
- 제품 판매 후 15년 경과되어 구매자 정보 확인 및 제품의 소재과악 어려움
- 도내 해당 제품 사용가구를 발굴하여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실시

### □ 개요

- 대상제품 : (주)위니아딤채에서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김치냉장고(뚜껑형)
- 리콜사유 : 부품의 노후화에 의한 합선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
- 발굴요령
  - 1) 제품 확인 시,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뚜껑형 구조 및 제조일자 확인
  - 2) 리콜 제품 제보
    - 위니아딤채 누리집([www.winiadimchae.com](http://www.winiadimchae.com)), 고객상담실(1588-9588)
- ※ 제품 사용자의 직접 신고 외 타인(마을 이·통장,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등)이 제보할 수도 있다. 제보자에게는 (주)위니아딤채에서 제보내용 확인 후 모바일 상품권(5천 원) 증정

### □ 홍보내용

-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집중 홍보 및 안내 요청

## 붙임1

# 리콜(결함 보상) 대상 제품

□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 대상('05. 9월 이전 제조 뚜껑형 모델)

대상 모델	제조기간	방법
<p>뚜껑형 구조 모델</p>  <p>대상 모델 사진(예시)</p>	~'05년 9월 이전	<p>노후 부품 (릴레이 포함 PCB 등) 무상 수거·교체</p>

□ 대상 모델 확인 방법

모델명 및 제조기간 확인 방법	
<p>(모델명)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의 모델명 확인</p> <p>예시) 모델명 : DD-12031D</p>	<p>(모델명 및 제조기간)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형명과 제조기간 확인</p> <p>예시) 형명 : DD-C2205RT(B) 제조년월일 : 2002.10.28.</p>
	

#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 미리! 미리! 체크

- ① 위니아딤채
- ② 2005년 9월 이전 제조
- ③ 두경형 구조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리콜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위니아딤채 고객센터에 접수하여  
A/S기사에게 꼭 확인받으세요.

## 해당제품의 노후 부품 무상 교체 및 수리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니아딤채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김치냉장고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0.12.2.).

(주)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 ☎ 1588-9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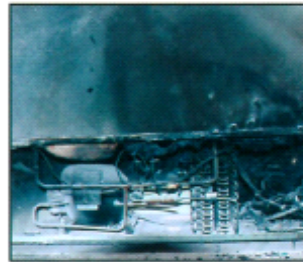
※ [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http://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한국소비자원과 사업자정례협의체는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왜?

“문제 없이 잘 썼는데...”  
방심하면 “불이야!”



**알아두면  
유용한  
노후제품  
사용 시 팁**



최근 5년간 여러 회사의 다양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1,250여 건. 매년 250여 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10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으세요.
2.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말아주세요.
3. 전원코드가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전원콘센트와 플러그를 완전히 결합시켜 사용하세요.



# 에너지 절약하고, '경남사랑상품권' 받아보세요!

(자료제공: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 211-2253)

그린뉴딜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경남도의 에너지 절감 시책'을 안내드립니다.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대상\* 중 경남DR(Demand Response) 및 국민DR 신청 세대

###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대상(스마트 미터 무상교체)

- ① 개별세대와 한전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인력 검침중인 아파트의 기계식 또는 전자식 전력량계(재개발·재건축 예정 제외)  
\*시공업체(누리플렉스) 현장실사 후 확정
- ② 필수 제공 동의서 : 계약서(입주자대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주민), 국민DR, 경남DR 참여 동의서

- 사업내용 : 스마트 미터 무상교체, 도민 참여형 에너지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에너지사용정보 제공과 경남DR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마일리지 적립(회당 2.5천원) 및 경남사랑상품권 전환 지급(최소 발행단위 5천원)

## □ 경남DR 운영계획

- 감축발령 횟수 : 국민DR 포함 주 1회 이상 \* 월4회 정도
  - 발령기준 : 전력수급비상 준비 또는 관심단계, 도내 미세먼지등 '나쁨' 이상 예상 될 때 등
  - 지급금액/방법 : 2,500원(회당) 마일리지 적립 및 경남사랑상품권 전환 지급(최소 발행단위 5천원)
  - 성공기준 : 고객기준부하(CBL\*) 기준 10% 이상 절감 시
- \* CBL(Customer Baseline Load) : 최근 평일 6일을 참고일로 하여, 4일을 유사일로 MID(4/6)방식과 최근 평일 10일을 참고로 하고 8일을 유사일로 하는 MID(8/10)방식을 도입하여 세대별 감축량을 산출
- 경남DR절차



## □ 홍보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도민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